

대부(중개)업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

□ 시·도지사 등록회사

1. 신규·갱신 등록

no	구분	서류명	비고
1	공통	등록 신청서	▶ (신규) : 등록 신청서 ▶ (갱신) : 등록 갱신 신청서
2		교육이수증 사본	▶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에 대한 이수증
3		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	▶ 신청인 소유인 경우 : 부동산등기부등본 ▶ 임대차 등의 경우 :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(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필요) ▶ 개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,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계약 또는 소유
4		주민등록표등본(개인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	
5		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	▶ (개인) 대표자, 업무총괄사용인(등록이 필요한 경우) ▶ (법인) 임원, 업무총괄사용인
6		인감증명서	▶ (개인)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▶ (법인) 법인인감증명서
7		대리인 신청 위임장	▶ 대리 신청의 경우
8		자기자본 증명서류	▶ 법인의 경우 ① 외부감사 대상 :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, 감사보고서 ② ①번 외 :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(대표이사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) ▶ 개인의 경우 ① 부동산 : 영업소 등기부등본(공시가격 포함)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동산(차량 등) :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현금 및 예치금 : 예금잔액증명서 등 ④ 기타 자산 :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부채 총계 :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
9	갱신	보증금 예탁 또는 공제가입서류	▶ 가입 문의(협회 02-3487-5800 → 내선 3번)
10		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증명서	▶ 법인인 경우 필수 ▶ 가입 문의(협회 02-3487-5800 → 내선 4번)
11		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	
12	공통	사업자등록증 사본	
13		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	▶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

2. 변경 등록

no	구분	서류명	비고
1	공통	변경등록 신청서	
2		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	
3		주민등록표등본(개인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	

4		인감증명서	▶ (개인)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▶ (법인) 법인인감증명서
5		대리인 신청 위임장	▶ 대리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
6		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증명서	▶ 법인만 해당
7		교육이수증 사본	▶ 대표이사,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
8	해당 사항 변경 시	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 대장	▶ 소재지 변경 시 ▶ 신청인 소유인 경우 : 부동산등기부등본 ▶ 임대차 등의 경우 :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(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필요) ▶ 개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,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계약 또는 소유
9		주주명부	▶ 출자자 변경 시
10		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	▶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
11		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	▶ (개인) 대표자,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 ▶ (법인) 임원,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
12		보증금 예탁, 보험 또는 공제 사항 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▶ 해당사항 발생 시

□ 금융위원회 등록회사

1. 신규 · 갱신 등록

no	구분	서류명	비고
1	신규	등록 신청서	○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 ○ 신청날짜 및 법인 인감 날인
2	갱신	등록 갱신 신청서	○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호
3		법인등기부등본	○ 말소사항 포함
4		임원, 주주, 업무총괄사용인의 기본 증명서	○ 주민번호 전부공개, 상세증명서 ○ 외국인 : 여권사본(외국법인 : 번역공증본) ○ 법인주주 : 법인등기부등본 ○ 최대주주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대표자·최대주주의 기본증명서 ※ 단, 신규 등록 시에도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 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발급받아 첨부
5	공통	임직원 총원 10%의 대부협회 교육이 수증	○ 영위사업 확인 필수,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교육이수증 ○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은 필수 ○ 공동 또는 각자 대표 : 각각의 교육이수증
6		영업소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(일반 - 일반 or 집합 - 전유부)	○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, 임대인 인감 ○ 법인소유 : 부동산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○ 전대계약 : 원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전대동의서, 건축물대장 ○ 신탁재산 : 신탁원부,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임(전)대차 동의서 ○ 건축물대장상 구분 등기된 소재지가 아닐 경우, 임차공간에 대한 도면 및 사진 제출
7		법인인감증명서	○ 공동 또는 각자 대표 :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
8		신청일 기준 직전사업연도말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 서	○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 불가 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

9		서울보증보험 인허가보험증권 or 한국대부금융협회 예탁증서·공제증서	○ 기간 6년 ○ (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시)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제 추가 가입 필수
10		정관 및 주주명부, 등기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	○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
11		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증명서	○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, 회원증 아님
12		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	○ 법인 및 주주(개인·법인 모두 포함) ○ 신규 : 등록신청 당일 신청원에 내방하여 금감원 대부업 등록 제출용 조회서 발급(조회기간 5년) ○ 갱신 : 등록신청 이후 신청원에 내방 또는 우편접수하여 금감원 대부업 등록 제출용 조회서 발급(조회기간 5년) 후 원본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○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, 최대주주 법인 및 해당법인의 대표자 / 최대주주도 제출
13		결격사유조회 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	○ 대표자, 임원, 업무총괄사용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(舊 본적지)등을 기재한 결격사유조회 의뢰서 ○ 동 결격사유조회 의뢰서를 신청인이 직접 등록기준지 조회기관에 의뢰한 후 회신 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함께 제출 ○ 등록기준지 시·군·구청 등에 법인 명의 공문 발송을 통해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
14		인적·물적 요건 확인 서류	○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등록 시에 한함 ○ 전산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, 자격 확인 서류 ○ 전산 설비 관련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, 금융보안원 작성 보안성 검토·확인서
15	신규	대부업·대부중개업 신규등록 구비서류 체크리스트	○ 체크리스트 내 확인란 자가체크하여 신규등록 접수 시 필수 제출
16		대표자 신분증	○ 대리 접수는 위임장 + 수임인 신분증
17	갱신	사업자등록증	
18		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	○ 갱신등록 심사 완료 후 등록증 교부받을 때 제출

2. 변경 등록

no	구분	서류명	비고
1	공통 서류	변경등록 신청서	○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
2		법인등기부등본	○ 말소사항 포함
3		법인인감증명서	○ 공동 또는 각자 대표 : 각각의 법인인감증명서
4		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증명서	○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, 회원증 아님
5		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	○ 변경등록 심사 완료 후 등록증 교부받을 때 제출
6	대표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	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교육이수증	○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의 경우 각각의 교육이수증(6개월 이내)
7	소재지 변경 시	영업소 임대차 계약서(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, 임대인 인감필), 건축물대장(일반 - 일반 or 집합 - 전유부)	○ 전대계약 : 원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, 전대동의서, 건축물대장 ○ 법인소유 : 부동산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○ 신탁재산 : 신탁원부,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의 임(전)대차 동의서 ○ 건축물대장상 구분 등기된 소재지가 아닐 경우, 임차공간에 대한 도면 및 사진 제출

8	임원, 주주, 업무총괄 사용인 변경 시	임원, 주주, 업무총괄사용인의 기본증명서	○ 주민번호 전부공개, 상세증명서 ○ 외국인 : 여권사본(외국법인 : 번역공증본) ○ 법인주주 : 법인등기부등본 ○ 최대주주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대표자· 최대주주의 기본증명서
9		결격사유조회 의뢰서 및 결격사 유조회 회보서	○ 대표자, 임원, 업무총괄사용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등 록기준지(舊 본적지)등을 기재한 결격사유조회 의뢰서 ○ 동 결격사유조회 의뢰서를 신청인이 직접 등록기준지 조회기관에 의뢰한 후 회신 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를 함께 제출 ○ 등록기준지 시·군·구청 등에 법인 명의 공문 발송을 통 해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
10	상호에서 '대부' 제외 시	직전사업연도말 국세청 표준재 무제표증명 또는 감사보고서	
11	보증보험 ↔ 보증금 변경 시	서울보증보험 인허가보증증권 or 한국대부금융협회 예탁증서· 공제증서	
12	주주변경 시	주주명부	○ 법인인감 날인
13		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	○ 개인·법인 주주 모두 포함 ○ 등록신청 이후 신청원에 내방 또는 우편접수하여 금감 원 대부업 등록 제출용 조회서 발급(조회기간 5년) 후 원본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○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, 최대주주 법인 및 해당법인의 대표자 / 최대주주도 제출

□ 등록기관 변경

구분	내용
시·도지사 → 금융위원회	○ 대부업등 감독규정 [별지 3]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를 현재 등록 중인 감독기관 (시·도지사)에 제출 ○ 금감원 요청 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[별지 5] 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, 영위업무확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※ 영위업무확인서 : (금감원 홈페이지 → 업무자료 → 은행·중소서민금융 → 대부업무 자료 → 63번 2. 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(등록기관변경) 내 양식 참고 ○ 기존 등록증은 금감원 심사 완료 후 금융감독원에 반납
금융위원회 → 시·도지사	○ 대부업등 감독규정 [별지 3]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를 현재 등록 중인 감독기관 (금융위원회)에 제출 ○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정보교환망 → 전체메뉴 → 대부업감독 → 신청접수 화면에서 등록기관 변경 신청 ○ 대부업등 감독규정 [별지 1의1] 대부업·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를 시·도지사에 제출 ○ 기존 등록증은 시·도지사 심사 완료 후 시·도지사에 반납